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1. 개요
2. 미국
 - 사회보장번호
 - 선발징병번호 및 납세자 인증번호
3. 독일
 - 신분증 및 전자신분증명의 번호
4. 일본
 - 주민표 번호
 - 개인식별번호
5. 스웨덴
 - 개인식별번호
6. 포르투갈
 - 개인식별번호



「입법현안 법률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정보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또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law.nane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2호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률정보실

목 차

1. 개요	1
2. 미국	5
가.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번호	5
나. 선발징병번호 및 납세자 인증번호	8
3. 독일	9
가. 「신분증법」에 따른 신분증 및 전자신분증명의 번호	9
4. 일본	18
가.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른 주민표 번호	18
나.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개인식별번호	19
5. 스웨덴	22
가.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식별번호	22
6. 포르투갈	26
가. 「헌법」상 개인식별번호	26

1.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로 작성”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식별기능은 본인 여부를 특정 문서나 기관에 인용하여 증명하게 하는 신분증명 인증수단으로 쓰이며, 다른 정보들과 결합·연결되어 공통 코드, 연결자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지는 속성 혹은 민감한 정보까지 알려줌으로써 식별이나 인증의 기능을 넘어 개개인의 특성까지 드러내게 되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다.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는 개인정보의 축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대규모로 해킹·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무단 수집·제공과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스팸발송, 피싱 등에 활용되어 개인, 기업, 사회 전체의 문제로도 부각된다.¹⁾

개인식별번호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라도 번호 자체에서 개인의 실

1)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보도 자료, 2012. 4. 20.

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거나 변경가능성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상호간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및 포르투갈의 입법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개인식별번호는 「사회보장법」²⁾에 따른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선발징병번호(Selective Service Number)³⁾, 납세자인증번호(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식별번호들은 그 신청을 국민의 개별적 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번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조합 형태로 구성된다. 또한 번호 자체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와 관련되어 수집되고 보존되는 관련 기록들은 비밀성이 보장되며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 「신분증법」⁴⁾에 따른 신분증 및 전자신분증명에 쓰이는 번호는 접근번호, 일련번호, 검증부호, 차단코드, 차단기호가 있다. 이러한 번호는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추출하거나 개인정보의 연결을 위해 일련번호 등

2) 42 USC § 405(c)(2)로 개정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42/405>, 2014. 4. 15. 방문)

3) Selective Service를 ‘선발징병’으로 번역한 것은 ‘윤광재,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4, 240면’ 참조

4) 「신분증법」(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Personalausweisgesetz -PAuswG, 제정: 2009. 6. 18, 최종개정: 2013. 8. 7. BGBl. I S. 3154,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pauswg/gesamt.pdf>)

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자신분증명의 경우,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하여 전자신분증명 각 단계마다 상응하는 조치가 확보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중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일본은 「주민기본대장법」⁵⁾에 따라 주민표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번호는 무작위번호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시민의 개인정보를 번호자체가 포함하지 않으며 주민의 청구에 의해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 밖에 개인식별번호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13년 3월 1일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⁶⁾을 제출하여, 현재 심의중⁷⁾이다. 동 법안의 목적은 개인번호와 법인번호를 이용하여 사회보장제도, 세금, 재해 대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특정 개인정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간 사업자는 정보제공 네트워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스웨덴의 개인식별번호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여되며, 번호에 생년

5) 「住民基本台帳法」(제정: 1976. 7. 23. 법률 제81호, <http://law.e-gov.go.jp/htmldata/S42/S42HO081.html>, 2014. 4. 15. 방문)

6)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案」(第183回 閣法 3號)

개요: <http://www.cas.go.jp/jp/houan/130301bangou/gaiyou.pdf>

요강: <http://www.cas.go.jp/jp/houan/130301bangou/youkou.pdf>

법률안-이유: http://www.cas.go.jp/jp/houan/130301bangou/houan_riyu.pdf

7) 심의경과: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keika/1DB3FCA.htm (2014. 4. 15. 방문)

월일이 포함되어 있고 성별 구분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다.⁸⁾ 하지만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웨덴 「개인정보법」⁹⁾은 민감한 개인정보 (sensitive personal data)의 처리를 금지하고, 처리 목적, 신원보안의 중요성, 기타 중요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식별번호의 사용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에서 개인식별번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예로 포르투갈을 들 수 있다. 포르투갈은 「헌법」¹⁰⁾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단 하나의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행위는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7. 9, 90면

9) 「개인정보법」(Personuppgiftslag: Personal Data Act 1998, <http://www.datainspektionen.se/in-english/legislation/the-personal-data-act>, 2014. 4. 15. 방문)

10) Constitution of the Portuguese Republic, Seventh Revision [2005] (http://app.parlamento.pt/site_antigo/ingles/cons_leg/Constitution_VII_revisao_definitive.pdf)

2. 미국

가.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번호

미국의 개인식별번호에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이하 "SSN")가 있다. 「사회보장법」 205(c)(2)¹¹⁾에 따라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임시거주자 등에게 9자리 숫자로 구성된 고유번호인 SSN을 발급한다. SSN은 사회보장 행정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세금정보, 신용정보, 학교기록, 의료기록 등이 연계되어 있는 개인식별번호로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SN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출생과 더불어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고 부여된다. SSN은 앞에 지역번호 3자리, 가운데 그룹번호 2자리, 뒤에 개인번호 4자리로 총 9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번호는 각 주(州)별로 배정·공개되어 있다. 그룹번호는 그 SSN 배정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¹²⁾ 따라서 SSN은 번호 자체는 개인정보를 포함

11) 42 USC § 405(c)(2)로 개정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42/405>, 2014. 4. 15. 방문)

12) 이형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확인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3권 제1집(통권 제37집), 2012. 2, 349면

하지 않는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법」¹³⁾ 제7(a)(1)조에서는 연방이나 주(州)정부 기관이 개인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로 SSN을 요구할 때에는 ① 사회보장번호의 제시가 필수적인가 임의적인가(SSN 제출의 필수성 여부), ②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요구가 실정법 내지 다른 권한에 근거한 것인가(SSN 요구의 법적 근거), ③ 제공된 사회보장번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제공된 SSN의 사용목적), ④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어떠한가(SSN 제시거부의 경우 처리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 문	번 역 문
<p>The Privacy Act of 1974</p> <p>Sec. 7(a) (1)</p> <p>(a)(1)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y to deny to any individual any right, benefit, or privilege provided by law because of such individual's refusal to disclose his social security account number.</p> <p>(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	<p>연방 프라이버시법</p> <p>제7(a)(1)조</p> <p>(a)(1) 모든 연방, 주, 혹은 지방의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이 자신의 사회보장번호의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 혜택이나 특권을 부인하는 것은 불법이다.</p> <p>(2) 위 단락 (1)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p>

13) 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 552a
(<http://www.justice.gov/opcl/privstat.htm>, 2014. 4. 15. 방문)

원 문	번 역 문
<p>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p> <p>(A) any disclosure which is required by Federal statute, or</p> <p>(B) any disclosure of a social security number to any Federal, State, or local agency maintaining a system of records in existence and operating before January 1, 1975, if such disclosure was required under statute or regulation adopted prior to such date to verify the identity of an individual.</p> <p>(b) Any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y which requests an individual to disclose his social security account number shall inform that individual whether that disclosure is mandatory or voluntary, by what statutory or other authority such number is solicited, and what uses will be made of it.</p>	<p>는 적용되지 않는다 --</p> <p>(A) 연방 법률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p> <p>(B)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었다면,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하고 운영된 기록 시스템을 유지하는 연방, 주(州)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에게 사회보장번호를 공개하는 경우.</p> <p>(b) 개인에게 사회보장번호의 공개를 요청하는 연방, 주(州)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은, 공개가 의무적 공개인지 자발적 공개인지 여부,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법령이나 기타 근거 그리고 사회보장번호의 사용용도를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나. 선발징병번호 및 납세자 인증번호

사회보장번호(SSN) 이외에 개인식별번호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번호인 ‘선발징병번호’(Selective Service Number)¹⁴⁾가 있다. ‘선발징병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이하 “SSS”)¹⁵⁾은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징병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미국 남자 시민권 소지자 및 이민 후 영주권을 취득한 남자들은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일 경우 SS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번호가 부여된다. 등록 후 등록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사 등의 이유로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2010년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약 92% 가량의 이름과 주소가 SSS에 등록되어 있다.¹⁶⁾

또 다른 개인식별번호의 경우로, 미국 국세청이 1999년 만든 ‘납세자 인증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PTIN”)가 있다. 신청자에 한해 발급되는 PTIN은 2000년 세금 신고기간부터 사용가능했으며, 미국의 납세자들은 SSN과 PTIN 중 자신들이 선호하는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14) Selective Service를 ‘선발징병’으로 번역한 것은 ‘윤광재,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4, 240면’ 참조

15) <http://www.sss.gov> (2014. 4. 15. 방문)

16)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6/12/military-draft-selective-service-system-gao-report_n_1591191.html (2014. 4. 15. 방문)

17)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홈페이지의 ‘납세자 인증번호’(PTIN) 설명 참조 (<http://www.irs.gov/Tax-Professionals/PTIN-Requirements-for-Tax-Return-Preparers>, 2014. 4. 15. 방문)

3. 독일

가. 「신분증법」에 따른 신분증 및 전자신분증명의 번호

독일에서는 2009년 6월 「신분증법」¹⁸⁾이 제정되어 새로운 신분증과 전자신분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신분증에는 발행관청, 발급일, 유효기간, 접근번호, 자동인식기로 읽을 수 있는 정보, 그 밖에 성명, 박사학위, 생년월일, 사진, 서명, 키, 눈의 색깔, 주소(독일에 주거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주소), 국적, 카드의 일련번호, 소속 교단에서의 칭호 명칭 및 예술가 명칭 등이 표기된다(제5조 제2항). 일련번호, 검증부호, 차단코드 및 차단기호에¹⁹⁾ 신분증소지자에 관한 정보나 그러한 정보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제5조 제8항).

신분증에 관련되는 번호의 구체적인 정의와 기능 또한 「신분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접근번호란 오로지 카드상에서만 나타나는 6자리로 된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신분증과 판독기 사이의 통신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제2조 제11항). 신분증의 일련번호는 4자리의 행정관청 번호와 임의로 부여된 5자리의 숫자로 구성되고 숫자와 문자를 혼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제2조 제8항). 검증

18) 「신분증법」(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Personalausweisgesetz –PAuswG, 제정: 2009. 6. 18, 최종개정: 2013. 8. 7. BGBl. I S. 3154,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pauswg/gesamt.pdf>)

19) Seriennummer는 ‘일련번호’, Prüfziffer는 ‘검증부호’, Sperrkennwort는 ‘차단코드’, Sperrmerkmale는 ‘차단기호’로 번역

부호는 자동인식기로 판독될 수 있는 영역의 정보로 이 영역의 완전성 확보에 기여한다(제2조 제9항). 차단코드란 전자신분증명과 연결된 신분증이 분실된 경우 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부호의 조합이고(제2조 제6항), 차단기호란 서비스제공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인식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부여된 숫자의 조합이다(제2조 제7항).

독일의 신분증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0년마다 새로운 신분증이 재발급 되고(제6조 제1항), 일련번호, 검증 부호, 차단코드, 차단기호에는 인적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8항). 또한 개인정보를 추출하거나 개인정보의 연결을 위해 일련번호, 차단코드, 차단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제20조 제3항).

독일의 전자신분증명은 인터넷, 즉 전자적 통신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보편적 수단으로 쓰이는데 전자신분증명에 요구되는 특별한 보안사항에 관해서는 동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하여 전자신분증명 각 단계마다 상응하는 조치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 조치들은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중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원 문	번 역 문
<p>Personalausweisgesetz</p> <p>§ 18 Elektronischer Identitätsnachweis</p> <p>(1) Der Personalausweisinhaber, der mindestens 16 Jahre alt ist, kann seinen Personalausweis dazu verwenden, seine Identität gegenüber öffentlichen und nichtöffentlichen Stellen elektronisch nachzuweisen. Abweichend von Satz 1 ist der elektronische Identitätsnachweis ausgeschlossen,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3a Abs. 1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des § 87a Abs. 1 Satz 1 der Abgabenordnung oder des § 36a Abs. 1 des Ersten Buches Sozialgesetzbuch nicht vorliegen.</p> <p>(2) Der elektronische Identitätsnachweis erfolgt durch Übermittlung von Daten aus dem elektronischen Speicher- und Verarbeitungsmedium des Personalausweises. Dabei sind dem jeweiligen Stand der Technik entsprechende Maßnahmen zur Sicherstellung von Datenschutz und Datensicherheit zu treffen, die</p>	<p>신분증법</p> <p>제18조 전자신분증명</p> <p>(1) 만 16세 이상의 신분증 소지자는 공공부문이나 혹은 민간부문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을 전자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문과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명은 행정절차법 제3a조, 조세법 제87a조 제1항, 사회법전 제1권 제36a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적 신분증명을 할 수 없다.</p> <p>(2) 전자적 신분증명은 신분증의 전자적 저장매체 및 처리매체에 있는 데이터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데이터보호와 데이터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가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조치들은 특히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공중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신분증</p>

원 문	번 역 문
<p>insbesondere die Vertraulichkeit und Unversehrtheit der Daten gewährleisten. Im Falle der Nutzung allgemein zugänglicher Netze sind Verschlüsselungsverfahren anzuwenden. Die Nutzung des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es durch eine andere Person als den Personalausweisinhaber ist unzulässig.</p> <p>(3) Das Sperrmerkmal und die Angabe, ob der Personalausweis gültig ist, sind zur Überprüfung, ob ein gesperrter oder abgelaufener Personalausweis vorliegt, immer zu übermitteln. Folgende weitere Daten können übermittelt werd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amilienname, 2. Vornamen, 3. Doktorgrad, 4. Tag der Geburt, 5. Ort der Geburt, 6. Anschrift, 7. Dokumentenart, 8. dienste- und kartenspezifisches Kennzeichen, 9. Abkürzung „D“ für Bundesrepublik 	<p>소지자의 전자신분증명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p> <p>(3) 차단표지와 신분증의 효력이 있는 정보는 차단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분증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항상 전달되어야 한다. 이 때 전달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 2. 이름, 3. 박사학위, 4. 생년월일, 5. 출생지, 6. 주소, 7. 서류형식, 8. 업무 및 카드에 특유한 표지, 9. 연방독일의 표지(D),

원 문	번 역 문
<p>Deutschland,</p> <p>10. Angabe, ob ein bestimmtes Alter über- oder unterschritten wird,</p> <p>11. Angabe, ob ein Wohnort dem abgefragten Wohnort entspricht, und</p> <p>12. Ordensname, Künstlername.</p> <p>(4) Die Daten werden nur übermittelt, wenn der Diensteanbieter ein gültiges Berechtigungszertifikat an den Personalausweisinhaber übermittelt und dieser in der Folge seine Geheimnummer eingibt. Vor Eingabe der Geheimnummer durch den Personalausweisinhaber müssen insbesondere die folgenden Angaben aus dem Berechtigungszertifikat zur Anzeige übermittelt werden:</p> <p>1. Name, Anschrift und E-Mail-Adresse des Diensteanbieters,</p> <p>2. Kategorien der zu übermittelnden Daten nach Absatz 3 Satz 2,</p> <p>3. Zweck der Übermittlung,</p> <p>4. Hinweis auf die für den Diensteanbieter zuständigen Stellen, die die Einhaltung</p>	<p>10. 서명 날인된 특정한 나이에 관한 정보,</p> <p>11. 거주지의 일치여부에 관한 정보,</p> <p>12. 소속 교단에서의 칭호, 예술가 명칭.</p> <p>(4) 서비스제공자가 유효한 권리증을 신분증 소지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해서 신분증 소지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데이터가 전달된다. 전달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p> <p>2. 법 제3항 제2문에 언급된 범주,</p> <p>3. 정보요청의 목적,</p> <p>4. 정보요청자의 데이터 보호 규정,</p>

원 문	번 역 문
<p>der Vorschriften zum Datenschutz kontrollieren,</p> <p>5. letzter Tag der Gültigkeitsdauer des Berechtigungszertifikats.</p> <p>(5) Die Übermittlung ist auf die im Berechtigungszertifikat genannten Datenkategorien beschränkt. Der Personalausweisinhaber kann die Übermittlung auch dieser Datenkategorien im Einzelfall ausschließen.</p>	<p>5. 인증서의 마지막 유효 기간.</p> <p>(5) 데이터의 전달은 권리증에서 언급한 데이터범주로 제한된다. 신분증소지자는 이 데이터범주의 전달을 배제할 수 있다.</p>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²⁰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신분증 및 전자신분증명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저장, 변경, 이용 등에 관하여 동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민간부문으로의 전달에 관해서는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정보전달기관의 담당 업무이행을 위해 민간부문으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동법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을 허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정보를 전달받는 제3자가 전달되는 정보획득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신뢰할 수 있도록

20)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제정: 1990. 12. 20, 최종개정: 2009. 8. 14. BGBl. I S. 2814,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dsg_1990/gesamt.pdf)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정보전달을 배제하려는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민간부문으로의 전달이 허용된다.

원 문	번 역 문
<p>Bundesdatenschutzgesetz</p> <p>§ 16 Datenübermittlung an nicht- öffentliche Stellen</p> <p>(1)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an nicht-öffentliche Stellen ist zulässig, wenn</p> <p>1. sie zur Erfüllung der in der Zuständigkeit der übermittelnden Stelle liegenden Aufgaben erforderlich ist und die Voraussetzungen vorliegen, die eine Nutzung nach § 14 zulassen würden, oder</p> <p>2. der Dritte,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Kenntnis der zu übermittelnden Daten glaubhaft darlegt und der Betroffene kein schutzwürdiges Interesse an dem Ausschluss der Übermittlung hat. Das Übermitteln von besonderen Arten</p>	<p>연방개인정보보호법²¹⁾</p> <p>제16조 민간부문으로의 정보전달</p> <p>(1) 민간부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p> <p>1.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보가 필요하고 제14조에 따라 정보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었거나,</p> <p>2. 정보를 전달받는 제3자가 전달되는 정보 획득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정보전달을 배제하려는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특수개인정보(제3조 제9항)는 제1문 제2호와와는 달리 제14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정보이용을 허용할</p>

21) 외국법률DB 참조 (외국법률DB는 내부DB로 아래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업무망: 국회전자문서시스템→국회정보시스템→도서관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
 인터넷망: 국회정보시스템→도서관정보시스템→국회법률도서관→외국법률DB

원 문	번 역 문
<p>personenbezogener Daten (§ 3 Abs. 9) ist abweichend von Satz 1 Nr. 2 nur zulässig, wenn die Voraussetzungen vorliegen, die eine Nutzung nach § 14 Abs. 5 und 6 zulassen würden oder soweit dies zur Geltendmachung, Ausübung oder Verteidigung rechtlicher Ansprüche erforderlich ist.</p> <p>(2)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ie übermittelnde Stelle.</p> <p>(3) In den Fällen der Übermittlung nach Absatz 1 Nr. 2 unterrichtet die übermittelnde Stelle den Betroffenen von der Übermittlung seiner Daten. Dies gilt nicht, wenn damit zu rechnen ist, dass er davon auf andere Weise Kenntnis erlangt oder wenn die Unterrichtung die öffentliche Sicherheit gefährden oder sonst dem Wohle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Nachteile bereiten würde.</p> <p>(4) Der Dritte,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darf diese nur für den Zweck verarbeiten oder nutzen, zu dessen</p>	<p>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거나, 법적 청구권을 주장, 행사 또는 방어하는데 필요한 경우.</p> <p>(2) 정보전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진다.</p> <p>(3)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전달의 경우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전달된 사실을 알린다.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고 있거나, 이를 알리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기타 연방 또는 주의 안녕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p> <p>(4)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는 자신에게 정보가 전달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이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정보를 전달</p>

원 문	번 역 문
<p>Erfüllung sie ihm übermittelt werden. Die übermittelnde Stelle hat ihn darauf hinzuweisen. Eine Verarbeitung oder Nutzung für andere Zwecke ist zulässig, wenn eine Übermittlung nach Absatz 1 zulässig wäre und die übermittelnde Stelle zugestimmt hat.</p>	<p>하는 기관은 제3자에게 이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전달이 허용되고 전달하는 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도 이 정보를 처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p>

4. 일본

가.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른 주민표 번호

일본의 개인식별번호는 「주민기본대장법」²²⁾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시행한 주민표 번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민표 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무작위번호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시민의 개인 정보를 번호자체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도도부현(지정정보처리기관)에서 시정촌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정하면, 시정촌이 주민표에 기재하여 각각의 주민에게 통지하는 형태를 띤다. 주민의 청구에 의해 주민표 번호는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제30조의3).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하에서는, 시정촌장 이외의 자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주민표 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정촌 및 도도부현 등의 집행기관이라 할지라도, 당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된 목적 외로 주민표 번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제30조의42). 또한 시정촌장 이외의 자는 누구라도 타인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주민표 번호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 목적으로 주민표 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제30조의43 제3항 및 제4항).

22) 「住民基本台帳法」(제정: 1976. 7. 23. 법률 제81호, <http://law.e-gov.go.jp/htmldata/S42/S42HO081.html>, 2014. 4. 15. 방문)

나.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개인식별번호

2013년 3월 1일 일본정부는 개인식별번호와 관련된 법안으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²³⁾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²⁴⁾이다. 동 법안의 목적은 개인번호와 법인번호를 이용하여 사회보장제도, 세금, 재해 대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법률안 제3조). 법률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번호의 이용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²⁵⁾ 법률안 제18조 제2호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개인번호카드의 이용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²⁶⁾

동 법률안 제19조에서 제57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특정개인정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간 사업자는 정보제공 네트워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정보제공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 검색값(연관 Key)으로 개인번호를 사용하지 못

23)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案」(第183回 閣法 3號)

개요: <http://www.cas.go.jp/jp/houan/130301bangou/gaiyou.pdf>

요강: <http://www.cas.go.jp/jp/houan/130301bangou/youkou.pdf>

법률안-이유: http://www.cas.go.jp/jp/houan/130301bangou/houan_riyu.pdf

24) 심의경과: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keika/1DB3FCA.htm
(2014. 4. 15. 방문)

25) ①국가·지방기관의 사회보장업무, 국세·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 재해대책 등과 관련된 사무, ②해당 사무를 신청하는 자(대리인 및 수탁자 포함)가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 ③재해 시 금융기관의 이용.

26) 민간 사업자의 이용에 관하여 ‘당분간’ 정령(政令)으로 정하지 않을 것임을 동 법안의 개요에서 밝히고 있음(<http://www.cas.go.jp/jp/houan/130301bangou/gaiyou.pdf>)

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문	번 역 문
<p>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案</p> <p>第十八条 個人番号カードの利用</p> <p>個人番号カードは、第十六条の規定による本人確認の措置において利用するほか、次の各号に掲げる者が、条例(第二号の場合にあっ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個人番号カードのカード記録事項が記録された部分と区分された部分に、当該各号に定める事務を処理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記録して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者は、カード記録事項の漏えい、滅失又は毀損の防止その他のカード記録事項の安全管理を図るため必要なものとして総務大臣が定める基準に従って個人番号カードを取り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一 市町村の機関 地域住民の利便性の向上に資するものとして条例で定める事務</p>	<p>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p> <p>제18조 개인번호카드의 이용</p> <p>개인번호카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조치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다음의 각 호의 자가 조례(제2호의 경우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번호카드의 카드 기록사항이 기록된 부분과 구분된 부분에 대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카드기록사항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기타 카드기록사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총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개인번호카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p> <p>1. 시정촌의 기관이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무</p>

원 문	번 역 문
<p>二 特定の個人を識別して行う事務を 処理する行政機関、地方公共団体、 民間事業者その他の者であって政 令で定めるもの 当該事務</p>	<p>2. 특정개인을 식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민간사업자 및 기타의 자로 정령에서 정한 자의 해당 사무</p>

5. 스웨덴

가.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식별번호

스웨덴에서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번호의 조합방식에서도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을 확인할 수 있고, 성별 구분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²⁷⁾

스웨덴의 표준 개인식별번호는 현재 조세·사회보장·병무행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선진 사회보장국가로서 개인식별번호를 국민의 편의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행정작용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행정편의와 통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²⁸⁾

1998년 제정된 스웨덴의 「개인정보법」(Personuppgiftslag: Personal Data Act 1998)²⁹⁾은 개인식별번호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13조는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로는 ① 인종, 민족적 배경, ② 정치적 견

2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앞의 글

28) 김일환,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자료, 2005. 4. 6, 30면

29) 스웨덴은 1973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법」(Datalag: The Data Act, 1973)을 제정하였으며, 1995년 EU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진송에 관한 개인보호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을 반영하여 다시 1998년 4월 「개인정보법」을 제정(<http://www.datainspektionen.se/in-english/legislation/the-personal-data-act>, 2014. 4. 15. 방문)

해, ③ 종교적, 철학적 신념, ④ 노동조합 회원의 신분, ⑤ 건강, 성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는 처리 목적, 신원보안의 중요성, 기타 중요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동법 제50조에서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 문	번 역 문
<p>Personal Data Act(1998:204)</p> <p>Section 13</p> <p>Prohibition against processing of sensitive personal data</p> <p>It is prohibited to process personal data that reve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race or ethnic origin, b) political opinions, c)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or d) membership of a trade union. <p>It is also prohibited to process such personal data as concerns health or sex life.</p> <p>Informat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the first and second paragraphs is designated as sensitive personal data in this Act.</p>	<p>개인정보법(1998:204)³⁰⁾</p> <p>제13조</p> <p>민감한 개인 정보 처리의 금지</p> <p>다음 사항이 노출되는 개인 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인종, 민족적 배경, b) 정치적 견해, c) 종교적, 철학적 신념, 또는 d) 노동조합 회원의 신분. <p>또한 건강, 성생활과 관련된 개인 정보의 처리도 금지한다.</p> <p>제1문 및 제2문에서 언급된 종류의 정보는 본 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로 지정한다.</p>

30) 외국법률DB 참조

원 문	번 역 문
<p>Section 22</p> <p>Processing of personal identity numbers</p> <p>Information about personal identity numbers or classification numbers may, in the absence of consent, only be dealt with when it is clearly justified having regard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purpose of the processing, b) the importance of a secure identification, or c) some other noteworthy reason. 	<p>제22조</p> <p>개인 식별번호의 처리</p> <p>개인 식별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의가 없는 경우,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명확한 타당성이 있을 때에만 처리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처리 목적, b) 신원보안의 중요성 또는 c) 기타 중요한 사유.
<p>Section 50 Detailed regulations</p> <p>The Government or the authority appointed by the Government may issue more detailed regulations concern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cases in which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permitted, b) the requirements which are imposed on the controller of personal data when processing personal data, c) the cases in which use of personal identity number is permitted, d) what a notification or application 	<p>제50조 세부 규정</p> <p>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기관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 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사례, b)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 정보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요건, c) 개인식별번호의 사용이 허용되는 사례, d) 개인 정보 관리자에게 통보나 신청을

원 문	번 역 문
<p>to a controller of personal data should contain,</p> <p>e) which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registered person and how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and</p> <p>f) notification to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procedure when information notified has been altered.</p>	<p>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p> <p>e) 등록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및 제공 방식, 그리고</p> <p>f) 감독 당국으로의 통보, 통보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의 절차.</p>

6. 포르투갈

가. 「헌법」상 개인식별번호

헌법에서 개인식별번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예로 포르투갈을 들 수 있다. 포르투갈 「헌법」³¹⁾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에 관한 모든 전산 자료에 접근할 권리, 그러한 자료들을 수정 및 갱신할 것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의 본래 사용목적에 관하여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에게 단 하나의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행위는 금한다”(제35조 제5항)고 명시하고 있다.

원 문	번 역 문
<p>Constitution of the Portuguese Republic</p> <p>Article 35 Use of computers</p> <p>1. Every citizen shall possess the right to access to all computerised data that concern him, to require that they be corrected and updated, and to be informed of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intended, all as laid down by law.</p>	<p>포르투갈 헌법³²⁾</p> <p>제35조 컴퓨터의 사용</p> <p>1.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에 관한 모든 전산 자료에 접근할 권리, 그러한 자료들을 수정 및 갱신할 것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의 본래 사용목적에 관하여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p>

31) Constitution of the Portuguese Republic, Seventh Revision [2005] (http://app.parlamento.pt/site_antigo/ingles/cons_leg/Constitution_VII_revisao_definitive.pdf)

32) 외국법률DB 참조

원 문	번 역 문
<p>[...]</p> <p>5. The allocation of a single national number to any citizen shall be prohibited.</p>	<p>[...]</p> <p>5. 모든 국민에게 단 하나의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행위는 금한다.</p>

➤ 법률자료조사관 : 박진애 (02-788-4765)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 1 대규모집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6)
-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 15 일본의 출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전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 20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2014. 3)
- 2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4)

※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http://law.nanet.go.kr>)를 통해서도 「입법현안 법률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2호

발 행 인 황창화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이규담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관리과
(150-7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4년 4월 25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 국회도서관 2014
발간등록번호 : 31-9720101-001145-14

<비매품>